

환경관리모범업체 62개업체 지정

○환경처는 지난 1월 14일 대기, 수질,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이 우수한 62개업체를 '92년도 환경관리모범업체로 지정·발표했다.

환경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환경관리 모범업체 지정제도를 채택하여 환경(대기, 수질, 산업폐기물)관리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환경관리모범업체로 지정·관리하여 왔는 바

환경관리모범업체의 지정은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가측정, 폐기물관리, 오염도 검사 등 환경관리를 모범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바 금년도에는 62개업체를 환경관리모범업체로 선정하였음.

환경관리모범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환경관리모범업체”라는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하고 정기 지도·점검대상에서 제외시켜주며

방지시설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저리용자하는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게 되며, 앞으로는 모범업체 지정제도를 내실화하여 부품의 발주 및 납품이 환경관리모범업체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업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무허가 배출업소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업소가 자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배출업소의 자율적인 환경감시기능이 제고되도록 할 예정이다.

'92년도 환경관리모범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명단과 모범사례는 붙임과 같다.

〈'92년도 환경관리모범업체 지정현황〉

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영동·중부권 (강원, 충북, 대전,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영남권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지정업체수	21	10	9	22

구분	지정업체		업종	규모 (종별)	지정번호	비고
	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서울청 (10)	동양맥주(주)이천공장(고종진)	경기. 이천. 부발 신하리 270	식·음료	대기1 (청) 수질1 (청)	제92- 1호	'89-'91 모범업소
	대우중공업(주)안양공장(이경훈)	경기. 의왕. 삼동 462-18	가공금속	대기3 (녹) 수질5 (청)	제92- 2호	'91 모범업소
	대우자동차(주)(김성중)	인천. 북구. 청천 199	가공금속	대기1 (청) 수질1 (청)	제92- 3호	'88-'91 모범업소
	동부제강(송용호)	인천. 북구. 가좌 590-1	철금속	대기1 (청) 수질2 (녹)	제92- 4호	'91 모범업소
	삼성전자(주)기흥공장(김광호)	경기. 용인. 기흥 능서리 산240	조립금속	대기1 (녹) 수질1 (녹)	제92- 5호	'90-'91 모범업소
	삼성전자(주)부천공장(강진구)	경기. 부천. 중구 도당 82-3	조립금속	대기2 (청) 수질2 (녹)	제92- 6호	'91 모범업소
	현대전자산업(주)(정몽헌)	경기. 이천. 부발 아미리산 133-2	조립금속	대기1 (청) 수질1 (녹)	제92- 7호	'92 신규추천업소
	(주)진로식품(장건용)	경기. 안산. 반월 공단 B9-40	식료품	대기1 (청) 수질2 (녹)	제92- 8호	'88-'91 모범업소
	금성통신(주)(박준영)	경기. 오산. 가수동 379	조립금속	대기3 (황) 수질3 (녹)	제92- 9호	'91 모범업소
	기아자동차(주)안산공장(이법창)	경기. 화성. 우정 이화리 1122	조립금속	대기2 (녹) 수질2 (청)	제92-10호	'91 모범업소

구 분	지 정 업 소		업 종	규 모 (종 별)	지정번호	비 고
	업체명(대표자)	소재지				
부산청 (4)	(주)금성사 창원 2공장 (이현조)	경남. 창원시 창원공 업기지 제2공단	가공금속	대기1 (녹) 수질1 (청)	제92-11호	'90-'91 모범업소
	현대자동차(주) (전성원)	경남. 울산시 중구 양 정동 700	가공금속	대기1 (청) 수질1 (녹)	제92-12호	'88-'89 모범업소
	삼성전관(주) (김정배)	경남. 울산군 삼남면 가천리 818	가공금속	대기1 (청) 수질1 (청)	제92-13호	'91 모범업소
	(주)터키온산공장 (최근선)	경남. 울산군 온산면 화산리 580	산업용화학	대기2 (청) 수질3 (녹)	제92-14호	'92 신규추천업소
광주청 (5)	전주제지(주) (김인호)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180	종이제조	대기1 (청) 수질1 (청)	제92-15호	'89-'91 모범업소
	(주)삼양사전주공 장(김상은)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339	산업화학	대기1 (황) 수질2 (청)	제92-16호	'92 신규추천업소
	한국전력공사 호남화력발전소 (안병화)	전남. 여천시 월내동 252	전 기	대기1 (청) 수질3 (청)	제92-17호	'89-'91 모범업소
	대우캐리어(주) (장기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 동 991-1L	가공금속	대기5 (청) 수질3 (녹)	제92-18호	'91 모범업소
	아시아자동차공 업(주)(조래승)	광주시 서구 내방동 700	가공금속	대기1 (청) 수질2 (녹)	제92-19호	'91 모범업소
대구청 (5)	동양석판공업(주) (손봉락)	경북. 포항 장흥 34	가공금속	대기2 (녹) 수질1 (청)	제92-20호	'91 모범업소
	삼정강업(주) (정윤모)	경북. 포항 괴동 767	1차금속	대기2 (녹) 수질5 (청)	제92-21호	'91 모범업소
	삼성전자(주)구미 공장(정용문)	경북. 구미 공단 259	가공금속	대기3 (청) 수질5 (청)	제92-22호	'92 신규추천업소
	(주)동일철강 (오순택)	경북. 포 항 장 흥 동 140-2	1차금속	대기3 (청) 수질4 (청)	제92-23호	'92 신규추천업소
	(주)금성사 (이현조)	경북. 구미 공 단 동 184	가공금속	대기1 (녹) 수질1 (청)	제92-24호	'92 신규추천업소
대전청 (5)	금성계전(주) (성기설)	충북. 청주시 송정동 1	가공금속	대기3 (청) 수질4 (청)	제92-25호	'91 모범업소
	동양강철공업(주) 제3공장(박종근)	대전. 대덕구 대화동 275-2	가공금속	대기3 (청) 수질4 (청)	제92-26호	'91 모범업소
	태평양화학(주) (황영규)	대전. 대덕구 대화동 227	기타화학	대기1 (청) 수질4 (녹)	제92-27호	'88 모범업소
	한국조폐공사 옥 천조폐창 (도기 갑)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23-1	종이제조	대기2 (청) 수질4 (청)	제92-28호	'88-'91 모범업소
	쌍용제지(주) (노철용)	충남. 연기군 조치원 읍 변암리 9	종이제조	대기1 (청) 수질1 (청)	제92-29호	'91 모범업소
원주청 (2)	삼양판지공업(주) (전영철)	강원. 원주시 우산동 390 (원주우산공단)	종이제조	대기2 (청) 수질2 (청)	제92-30호	'90-'91 모범업소
	한일전기(주) (김길웅)	강원. 원주시 우산동 411-6 (원주우산공 단)	가공금속	대기5 (청) 수질5 (청)	제92-31호	'91 모범업소
서울시 (4)	동양맥주(주)영등 포공장(고종진)	서울. 영등포구 영등 포동 582	식료품	대기1 (청) 수질1 (청)	제92-32호	'88-'90 모범업소

구 분	지 정 업 소		업 종	규 모 (종 별)	지정번호	비 고
	업체명(대표자)	소 재 지				
	제일제당(주)영등포공장(김정순)	서울. 구로구 구로동 636	식료품	대기1 (청) 수질2 (청)	제92-33호	'92 신규추천업소
	롯데칠성음료(주)(박준익)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2-1	음료품	대기2 (청) 수질2 (청)	제92-34호	'90 모범업소
	두산식품(주)(한일성)	서울. 구로구 독산동 292-1	식료품	대기2 (청) 수질2 (청)	제92-35호	'88-'90 모범업소
부산시 (2)	한국전력부산화력발전소(소장)	부산. 사하구 감천동 441-1	발전업	대기1 (청) 수질3 (청)	제92-36호	'92 신규추천업소
	태광산업(주)(이기화)	부산. 금정구 구서1동 90	섬유	대기1 (청) 수질2 (청)	제92-37호	'92 신규추천업소
대구시 (2)	제일모직(송세창)	대구. 북구 침산동 105	섬유제조	대기1 (청) 수질1 (청)	제92-38호	'88 모범업소
	(주)코오롱(하기주)	대구. 수성구 수성4가 1090	섬유제조	대기1 (청) 수질2 (청)	제92-39호	'88 모범업소
인천시 (3)	제일제당(주)인천2공장(김정순)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64	식료품	대기1 (청) 수질3 (청)	제92-40호	'88-'90 모범업소
	제일제당(주)인천1공장(김정순)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121	식료품	대기1 (청) 수질2 (청)	제92-41호	'92 신규추천업소
	한국전력공사 인천화력발전소(안병화)	인천. 서구 원창동 336	전기	대기1 (청) 수질3 (청)	제92-42호	'92 신규추천업소
경기도 (4)	(주)농심(신춘호)	경기. 군포시 당정동 203-1	식료품	대기1 (청) 수질2 (청)	제92-43호	'91 신규추천업소
	제일제당(주)이천1공장(김정순)	경기. 이천군 마장면 덕평리 산34	식료품	대기4 (청) 수질3 (녹)	제92-44호	'92 신규추천업소
	오뚜기라면(주)(이중덕)	경기. 평택군 안중면 용성리 44-4	식료품	대기2 (청) 수질4 (청)	제92-45호	'92 신규추천업소
	(주)대한중외제약(김달우)	경기.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41-46	의약품	대기2 (녹) 수질3 (청)	제92-46호	'92 신규추천업소
강원도 (1)	(주)동방(심재익)	강원. 춘천시 우두동 699	섬유	대기3 (청) 수질4 (녹)	제92-47호	'90 모범업소
충남도 (2)	풍만제지(주)조치원공장(김낙서)	충남. 연기군 남면 보통리 319-1	종이제조	대기1 (청) 수질1 (청)	제92-48호	'92 신규추천업소
	동신제지공업(주)(유영식)	충남. 온양시 실목동 100-1	종이제조	대기2 (청) 수질2 (청)	제92-49호	'92 신규추천업소
전북도 (2)	한국전력공사 군산화력발전소(사장)	전북. 군산시 경암동 590-2	발전업	대기1 (청) 수질4 (청)	제92-50호	'92 신규추천업소
	(주)완산제지(이준규)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828	제지업	대기2 (청) 수질2 (청)	제92-51호	'90 모범업소
전남도 (2)	(주)금호곡성공장(윤양중)	전남. 곡성군 입면 성봉리 145	고무프라스틱제조	대기1 (청) 수질4 (청)	제92-52호	'92 신규추천업소
	(주)럭키나주공장(이정성)	전남. 나주시 송월동 1	산업용화학	대기1 (청) 수질1 (청)	제92-53호	'92 신규추천업소
경북도 (4)	유한김벌리(주)(이중대)	경북. 김천시 대광동 746-1	종이제조	대기1 (청) 수질1 (청)	제92-54호	'92 신규추천업소

구 분	지 정 업 소		업 종	규 모 (종 별)	지정번호	비 고
	업체명(대표자)	소 재 지				
	세림제지(주) (이동욱)	경북. 달성군 유가면 상리 720	종이제조	대기1 (청) 수질1 (청)	제92-55호	'92 신규추천업소
	제일합성(주)경산 공장(서주인)	경북 경산시 중산동 1	섬유제조	대기1 (청) 수질1 (청)	제92-56호	'92 신규추천업소
	서라벌식품(주) (김대순)	경북. 영일군 흥해읍 용전동 719-10	음식료품	대기3 (청) 수질3 (청)	제92-57호	'88-'90 모범업소
경남도 (5)	(주)럭키울산공장 (최근선)	경남. 울산군 온양면 망양리 388	화학제품	대기1 (청) 수질3 (청)	제92-58호	'92 신규추천업소
	동남사료(오남배)	경남. 삼천포시 사등 동 184-2	사료제조	대기3 (청) 수질4 (청)	제92-59호	'91 신규추천업소
	빙그레(박정수)	경남. 김해군 한림면 병동리 1978-1	식료품제조	수질3 (청) 수질3 (청)	제92-60호	'92 신규추천업소
	비락 (주) (오준석)	경남. 김해시 삼방동 116(안동공단)	식료품제조	대기2 (청) 수질4 (청)	제92-61호	'92 신규추천업소
	밀양도자기 (김문갑)	경남. 밀양시 가곡동 693	도자기제조업	대기2 (청) 수질5 (녹)	제92-62호	'92 신규추천업소

◎ 환경처고시 제92-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1월 13일

환경처장관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결과

일련번호	물 질 명	심사결과
'92-1	1-(3,5-디클로로-4-(3-클로로-5-트리플루오로메틸-2-피리딜옥시)페닐)-3-(2,6-디플루오로벤조일)우레아	○유독물 에 해당 안됨
'92-2	1-(3,5-Dichloro-4-(3-chloro-5-trifluoromethyl-2-pyridyloxy)phenyl)-3-(2,6-difluorobenzoyl)urea; Chlorfl-uazuron [71422-67-8] C ₂₀ H ₉ Cl ₃ F ₅ N ₃ O ₃ (±)-2-[(E)-1-[(E)-3-클로로알릴옥시이미노]프로필]-5-[2-(에틸티오)프로필]-3-히드록시시클로헥-2-엔온	○유독물 에 해당 안됨
'92-3	C ₁₇ H ₂₆ ClNO ₃ S O-3-tert-부틸페닐 6-메톡시-2-피리딜(메틸)티오카르바산 O-3-tert-Butylphenyl 6-methoxy-2-pyridyl (methyl) thiocarbamate; pyributic-	○유독물 에 해당 안됨

일련번호	물 질 명	심사결과
'94-4	arb(88678-67-5)C ₁₈ H ₂₂ N ₂ O ₂ S 시스, 트랜스-3-클로로-4-(4-메틸-2-(1H-1,2,4-트리아졸-1-일메틸)-1,3-디옥소란-2-일)페닐 4-클로로페닐 에테르 cis, trans-3-Chloro-4-(4-methyl-2-(1H-1,2,4-triazol-1-ylmethyl)-1,3-dioxolan-2-yl)phenyl 4-chlorophenyl ether; Difenoconazole [119446-68-3]C ₁₉ H ₁₇ Cl ₂ N ₃ O ₃	○유독물 에 해당됨
'92-5	1-(4-(2-클로로-α, α, α-트리플루오로-p-톨릴옥시)-2-플루오로페닐)-3-(2,6-디플루오로벤조일)우레아 1-[4-(2-Chloro-α, α, α-trifluoro-p-tolyloxy-2-fluorophenyl)-3-(2,6-difluorobenzoyl)urea; Flufenox-uron [101463-69-8]C ₁₉ H ₁₁ ClF ₆ N ₃ O ₃	○유독물 에 해당안 됨
'92-6	tert-부틸(E)-α-(1,3-디메틸-5-페녹시피라졸-4-일메틸렌아미노-옥시)-p-톨루에이트 tert-Butyl(E)-α-(1,3-dimethyl-5-phenoxy-pyrazol-4-ylmethyleneamino-oxy)-p-toluate; Fenpyroximate C ₂₄ H ₂₇ N ₃ O ₄	○특정유 독물에 해 당됨 ○제조, 수입, 판 매 및 사 용금지 다 만, 농약 제조용* 5% 액상 수화제) 은 제외.
'92-7	염화 테트라키스[1-(N-프로필-N-(2	○유독물

일련번호	물 질	명	심사결과
92-8	(2,4,6-트리클로로페녹시)에틸)카르바모일 이미다졸)망간(II)착화합물 Tetrakis[1-(N-propyl-N-(2-(2,4,6-trichlorophenoxy)ethyl))carbamoylimidazole)mangness(II)chloride complex:Prochloraz Manganese complex [C ₁₅ H ₁₆ Cl ₃ N ₃ O ₂] ₄ MnCl ₂		에 해당안 됨
	3-클로로-N-(3-클로로-5-트리플루오로메틸-2-피리딜)- α, α, α -트리플루오로-2,5-디니트로-p-톨루이딘 3-Chloro-N-(3-chloro-5-trifluoromethyl-2-pyridyl)- α, α, α -trifluoro-2,6-dinitro-2,6-dinitro-p-toluidine:Fluazinam [79622-59-6] C ₁₃ H ₄ Cl ₂ F ₆ N ₄ O ₄		○특정유독물에 해당됨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농약 제조용(0.5% 분제)은 제외

◎ 환경처고시 제92-2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24호 및 제3조 [별표 2] 제9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및 특정유독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22년 1월 13일 환경처장관

유독물지정

지정번호	물 질	명
428	시스, 트랜스-3-클로로-4-(4-메틸-2-(1H-1,2,4-트리아졸-1-일메틸)-1,3-디옥솔란-2-일)페닐-4-클로로페닐 에테르 cis, trans-3-Chloro-4-(4-methyl-2-(1H-1,2,4-triazol-1-ylmethyl)-1,3-dioxolan-2-yl)phenyl 4-chlorophenyl ether:Difenoconazole(119446-68-3) C ₁₉ H ₁₇ Cl ₂ N ₃ O ₃	
429	tert-부틸(E)- α (1,3-디메틸-5-페녹시피라졸-4-일메틸렌아미노-옥시)-p-톨루에이트 tert-Butyl(E)- α -(1,3-dimethyl-5-phenoxy-pyrazol-4-ylmethyleneamino-oxy)-p-toluate:Fenpyroximate C ₂₄ H ₂₇ N ₃ O ₄	
430	3-클로로-N-(3-클로로-5-트리플루오로메틸-2-피리딜)- α, α, α -트리플루오로-2,6-디니트로-p-톨루이딘 3-Chloro-N-(3-chloro-5-trifluoromethyl-2-pyridyl)- α, α, α -trifluoro-2,6-dinitro-p-toluidine:Fluazinam [79622-59-6]C ₁₃ H ₄ Cl ₂ F ₆ N ₄ O ₄	

특정유독물지정

지정번호	물 질	명
133	tert-부틸(E)- α -(1,3-디메틸-5-페녹시피라졸-4-일메틸렌아미노-옥시)-p-톨루에이트 tert-Butyl(E)- α -(1,3-dimethyl-5-phenoxy-pyrazol-4-ylmethyleneamino-oxy)-p-toluate:Fenpyroximate C ₂₄ H ₂₇ N ₃ O ₄	
134	3-클로로-N-(3-클로로-5-트리플루오로메틸-2-피리딜)- α, α, α -트리플루오로-2,6-디니트로-p-톨루이딘 3-Chloro-n-(3-chloro-5-trifluoromethyl-2-pyridyl)- α, α, α -trifluoro-2,6-dinitro-p-toluidine:Fluazinam [79622-52-6]C ₁₃ H ₄ Cl ₂ F ₆ N ₄ O 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환경처고시 제92-3호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992년 1월 16일 환경처장관

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농공단지명	공동처리구역		비 고
	대상지역	면적(천m ²)	
청양군 정산역촌리 일원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273	(농공단지 지정일) 1989.2.28.

※농공단지 공동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지적도면은 청양군 및 환경처 시설과에 비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합니다.

◎ 환경처고시 제9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동차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규정(환경처고시 제91-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992년 1월 17일 환경처장관

제작자동차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규정중개정 제7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시험, 소음시험 또는 경시변화시험은 관계공무원의 입회시험으로 하되, 자동차공해연구소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자의 자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변경을 하는 경우에 3원촉매장치의 변경에 의한 내구성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차에 의한 내구성시험(이하 “실차시험”이라 한다)에 갈음할 수 있다.

1. 당초 인증시 내구성시험에 사용한 3원촉매장치와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3원촉매장치를 같은 조건에서 대기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상당하는 경시변화시험을 하여 이때 산정된 열화계수의 차이가 당초의 3원촉매장치를 기준으로 각 항목마다 10%이하 인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새로운 3원촉매장치의 열화계수가 당초 인증차종의 실차시험 열화계수 보다 15%이상 크지 아니한 때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3원촉매장치의 열화계수와 당초 인증차종의 실차시험 열화계수 중 높은 항목의 열화계수를 인증변경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배출가스시험에 적용할 것으로 자동차 제작자가 인정하는 때

제8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기규칙 제56조제1항 단서 또는 소음규칙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항목별 인증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기규칙 제54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소음규칙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의 경우

2. 대기규칙 제5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제작 동일차종으로서 원동기 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의 경우

3. 자동차의 사용목적상 또는 구입 경위에 따라
환경관리인. 1992.2

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또는 제작차소음허용기준 달성이 곤란한 고속소방차·세관경매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의 경우.

제14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동일차종별로 연간 예상판매량이 10,000대 이하 일 때에는 내구성시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동기의 길들이기 운전은 100시간까지 할 수 있으며 이중 전부하상태 50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내구성시험을 하지 아니한 동일차종의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1의 열화계수(이하 “지정열화계수”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 차종의 연간 판매실적이 10,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실제 내구성시험을 하여 산출한 열화계수를 적용할 때까지 지정열화계수보다 20% 높은 열화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별표 3] 제목의 관련조항“(제4조제2항관련)”을 “(제4조제1항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제목의 관련조항“(제4조제3항관련)”을 “(제4조제1항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제목의 관련조항“(제4조제4항관련)”을 “(제4조제2항관련)”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환경처고시 제91-25호)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받는 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한다.

◎ 환경처고시 제92-5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소음진동 규제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처고시 제91-26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992년 1월 17일

환경처장관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규정중개정

제4조 중“전부하상태로 20시간까지”를“전부하상태의 50시간을 포함하여 100시간까지”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내용 :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환경처고시제92-6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진동검사용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교정용품 등에 관한규정(환경처고시 제91-28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992년 1월 17일

환경처장관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진동검사용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교정용품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 제10조 제1항제1호중 “표시농도±1%”를 “표시농도 3%”로 한다.

[별표 1]8. 나, (1), (나)와 [별표 2]9, 4) 및 [별지 제9호서식]3, 라중 “15배 이상”을 각각 “15배±5%”로 한다.

[별표 2]4. 나, 2). ②중 “가열시 수소염분석법”을 “가열식수소염분석법”으로 한다.

[별표 2]6. 나, 5)중 “변동상관성이 3%이내”를 “변동상관성이 5%이내”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제목의 관련조항“(제13조관련)”을“(제12조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내지 [별지 제11호서식]1. 일반사항란중 “최초정도검사번호”를 각각 “최초정도검사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3.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교정용추에 의한 검량선을 작성할 때 인장 및 압축축의 각 측정점에서 계산치와 측정치의 오차의 범위가 1%이내이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승인내용란중 “확인검사번호”

를 “최초정도검사일”로 한다.

*별지내용 :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환경처고시제92-7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6조제2항 및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의검사 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처고시 제91-29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992년 1월 17일

환경처장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 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중 개정

제5조 중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중 “미국재료시험학회시험방법 (ASTM D4420)”을 “미국재료시험학회시험방법(ASTM D4420, D1319, D3606)”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2. 유독물질함유량의 측정물질난중 “P”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환경처고시제92-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 제81조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진동검사 및 검사용기기·교정용품검사에 관한 수수료(환경처고시 제91-69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992년 1월 17일

환경처장관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진동 검사 및 검사용기기·교정용품검사에 관한 수수료중 개정

1. 제작차배출가스 및 소음검사 수수료, 가 및 나.의 비교난중(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담당자가 현지출장으로 자동차제작사의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시설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1일1인 기준 27,400원으로 한다.

2. 운행차배출가스 및 소음검사 수수료의 비교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출가스 검사에는 제작이륜차를 포함한 다.

(2) 2개 항목 측정기기에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때에는 1개 항목 측정시에도 같다.

(3) 부가가치세 별도

3. 자동차검사용기기, 소음·진동검사용기기 및 교정용품시험 수수료 가와 나 및 마의 비교난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2개 항목 측정기기에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때에는 1개 항목 측정시에도 같다.

(2) 부가가치세 별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환경관리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과목

● 기술사

분야·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
대기관리 기술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대기오염의 현상과 계획, 관리, 방지 및 측정기술에 관한 사항
수질관리 기술사	"	폐수 및 폐기물처리, 토양, 하천 및 해양오염, 기타 환경오염의 현상, 계획 및 관리방지에 관한 사항
소음·진동 기술사	"	소음진동의 현상 및 계획, 관리, 방지 및 측정기술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 기술사	"	일반 및 산업폐기물의 관리계획과 처리 처분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 기사

분야·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
대기기사 1급	필기 시험	1. 대기오염 개론 2. 연소공학 3. 대기오염방지기술 4. 대기오염공정시험 방법 5. 대기환경관계법규
	실기 시험	대기오염 방지실무
수질기사 1급	필기시험	1. 수질오염개론 2. 산하수도 계획 3. 수질오염방지 기술 4. 수질오염공정시험 방법 5. 수질환경관계법규
	실기시험	수질오염방지실무

분야·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
소음·진동 기사급	필기시험	1. 음향공학 2. 소음·진동 개론 3.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 4. 소음·진동 방지기술 5. 소음·진동관계법규
	실기시험	소음·진동방지실무
폐기물처리 기사급	필기시험	1. 폐기물개론 2. 폐기물처리 기술 3. 폐기물 소각 및 열회수 4. 폐기물공정시험 방법 5. 폐기물관계법규
	실기시험	폐기물처리 실무
대기기사2급	필기시험	1. 대기오염 개론 2. 대기오염공정시험 방법 3. 대기오염 방지 기술 4. 대기환경관계법규
	실기시험	대기오염방지실무
수질기사2급	필기시험	1. 수질오염 개론 2. 수질오염방지기술 3.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4. 수질환경관계법규
	실기시험	수질오염방지실무
소음·진동 기사2급	필기시험	1. 소음·진동개론 2.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3. 소음·진동방지기술 4. 소음·진동관계법규
	실기시험	소음·진동방지실무
폐기물처리 기사2급	필기시험	1. 폐기물개론 2. 폐기물처리 기술 3. 폐기물공정시험 방법 4. 폐기물관계 법규
	실기시험	폐기물 실무